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69
----------	-----

제출년월일 : 2004. 8. 16.

제 출 자 : 하학렬위원외 4명

1. 수정이유

-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인 군민에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관한사항(안 제20조)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중 “3,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세율)①균등할의 세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p> <p>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u>3,000원</u></p> <p>나. (생략)</p>	<p>제20조(세율)①----- -----.</p> <p>1. ---</p> <p>가. ----- ----- <u>5,000원</u></p> <p>나.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세율)①----- -----.</p> <p>1. ----</p> <p>가. ----- ----- <u>4,000원</u></p> <p>나. (현행과 같음)</p>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조(세율)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